

2022년 제8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2022년 제8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2일
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

임용예정부서	임용분야	임용등급 (일반임기제)	선발예정 인원
2개 부서	2개 분야		2명
해양항만과	항만안전점검관	지방행정주사	1명
인사과	구내식당 조리사	지방조리서기	1명

2. 응시 자격 요건

가.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 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
- ※ 연령·성별 제한 없음(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※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-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⑤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-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
나. 개별 자격요건 : 임용 예정 분야별 다음의 자격 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

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

- ❖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, 임용 후 수행 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
- ❖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(예시 : 주 20시간 근무)
- ❖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
임용예정 부 서	임용분야	임용등급 (일반임기제)	자격기준 (면접시험 (예정)일 기준) *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,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
해양항만과	항만안전 점 검 관	지방행정주사	<p>(경 령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분야 학과의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. 안전교육실시기관에서 항만안전 분야 교수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·항만물류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<p>▶ 관련분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“산업안전 분야”란 산업재해예방, 산업안전진단, 산업 안전조사 등과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. - “항만안전 분야”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사업장에서 「산업안전 보건법」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서 수행 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를 말한다. - “항만물류 분야”란 항만운송·보관, 항만이용·운영 등과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.
인 사 과	구내식당 조 리 사	지방조리서기	<p>(경 령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▶ 관련분야 실무경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의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분야 근무경력 <p>* 집단급식소 :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</p> <p>※ (우대요건)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</p>

다. 직무내용

임용분야 (임용부서)	임용등급 (일반임기제)	주요업무
항만안전점검관 (해양항만과)	지방행정주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내 7개 지방관리무역항* 안전관리 * 진해항, 통영항, 삼천포항, 장승포항, 옥포항, 고현항, 하동항 • 지방관리무역항의 하역사업자 안전관리계획 승인, 이행 실태확인 및 시정조치 • 항만사업장 안전점검 계획수립·시행 및 안전 위해요소 제거 • 항만 운송사업 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 운영
구내식당 조리사 (인사과)	지방조리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내식당 식단에 따른 음식 조리업무 총괄(전처리, 조리, 배식 등) • 식재료의 검수 및 재고 관리 • 조리실 조리 지도 감독 및 중대재해 점검·관리 • 구내식당 사무 업무 지원 및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

3. 근거 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(법률 제18308호, 2022. 1. 21.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(대통령령 제32605호, 2022. 4. 27.)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(행정안전부 예규 217호, 2022. 9. 1.)
- 「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(경상남도 규칙 제3305호, 2022. 1. 27.)

4. 보수 수준

- 근거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등에 따름

(단위 : 천원)

구분 (일반임기제)	등급	상한액	하한액	비고
지방행정주사	6급(상당)	77,932	51,928	
지방조리서기	8급(상당)	55,877	39,859	

- ※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최초 임용시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, 자격,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
- ※ 연봉 외 급여(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가족수당, 시간외 근무수당 등)는 「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- 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(임기제 공무원)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임용 기간

- 2년(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)

6. 시험 방법

- 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(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)
- 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(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항목에 대해 실시)
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
 -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 -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 - 예의 · 품행 및 성실성
 - 창의력 ·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정

7. 시험 일정

공 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서류전형 합격자발표	면접시험일자 (예정)	최종합격자 발표(예정)
'22. 12. 2.(금)	'22. 12. 19.(월) ~ 21.(수) * 방문접수는 09:00~18:00 가능	'23. 1. 9.(월)	'23. 1. 12.(목) ~ 1. 13.(금)	'23. 1. 19.(목)

- *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각 분야별 세부일정 확정 공고
⇒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(<http://www.gyeongnam.go.kr>)에 게시

8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

나.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방문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※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접수 대신 등기우편 접수 권고

다. 접수장소 : 경남도청 인사과 채용담당(본관 2층)

※ ☎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(사림동) 경상남도청 인사과 채용담당

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

- ❖ 등기우편 접수는 **마감일 소인분에 한정**(택배, 퀵서비스 활용 접수 불가)
 - *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 전화확인 후 송부
- ❖ **응시표 회신을 위한 일반 편지봉투 동봉**(등기용 우표 부착, 수신인 성명·주소 기재)

9. 재공고

-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(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실시
-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

10. 제출 서류

① 응시원서 1부(붙임 양식)

- 응시수수료 : 경상남도 세외수입고지서 납부(우편접수시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)

- 금액 : 5급(상당) 10,000원 / 6·7급(상당) 7,000원 / 8·9급(상당) 5,000원
- 납부방법 : 원서접수 시 발급한 세외수입고지서 금융기관 납부(당일)
- 유의사항 :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불가

② 이력서 1부(붙임 양식)

- 학력, 자격, 상훈, 경력, 저술,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
- ※ 단, 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 불가)

③ 자기소개서 1부(A4 2매 이내, 붙임 양식)

- ④ **직무수행계획서 1부**(A4 3매 이내, 붙임 양식)
- ⑤ **주민등록초본 1부**(주소이력 포함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
 - 붙임 「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」 제출 시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
- ⑥ **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**(원본)
 - 박사 학위는 석사·학사 학위,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
- ⑦ **경력증명서 1부**(원본)
 - 경력 인정범위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(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 불가)
 - 발행기관(기업체)의 직인,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(날인), 연락처 기재
 - 발행기관의 성격 증명자료(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증명서류,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) 첨부
 - ※ 비정규직(비상근)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(미제출 시 불인정)

• **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증 사본 반드시 제출**

- ⑧ **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**(원본)
 -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홈페이지 출력 또는 공단 방문
 -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토를 위해 가입기간을 “**전체기간**” 선택
 -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 할 경우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
- ⑨ **관련분야 자격(면허)증 사본, 외국어능력·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**(해당자에 한함)
 - 자격(면허)증 유효기간 :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
 -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
- ⑩ **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**(붙임 양식)

- **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 제출**
-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
-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·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함
(예시 :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, 자격증명서 등)
-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되며,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
-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11.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

-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합산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(상·중·하의 평정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, 단 동률이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자)를 합격자로 결정

평정 요소	◆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	◆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	◆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◆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	◆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	

- 불합격 처리기준
 - 면접시험 위원 1인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“하(미흡)”로 평정
 -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(미흡)”로 평정
- 최종합격자 발표 :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

12. 응시자 유의사항

-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예: 졸업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
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
- 2차시험(면접시험)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임용포기, 임용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- 사. 특히,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원칙(자격·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가능)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되며,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
- 아.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
- 자.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
- 차.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
- 카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(채용담당 ☎055-211-3523)로 문의 하시기 바람

13.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에는 응시자 외에는 출입을 전면 통제함
- 나. 시험 응시자는 손소독,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시험 진행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함
 - * 응시자 신분 확인 절차 진행시에만 마스크를 벗고 확인
- 다. 코로나 19 확진자, 고열(37.5℃ 이상), 기침,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접촉자 및 유증상자는 해당부서(경상남도 인사과, ☎055-211-3523)로 사전 신고, 시험실시기관의 조치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
- 라. 응시자 중 시험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,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을 이용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 될 수 있음
- 마.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일까지 마스크 착용, 손소독, 발열체크 등을 통해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

※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